

## 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

- 2011. 08. 26. 최초제정
- 2012. 08. 01. 부분개정
- 2016. 04. 01. 부분개정
- 2017. 08. 01. 부분개정
- 2017. 09. 01. 부분개정
- 2022. 12. 01. 부분개정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칭한다)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 교원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원 연구년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)**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정의)** 본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2.12.01.>

1. 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학 법인정관 제39조 및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2조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말한다.<개정 2016.04.01.>
2.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본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.<개정 2022.12.01.>

**제4조(신청자격)** 연구년 교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2.12.01.>

1. 본 대학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전임교원. 단, 외국인 교원 및 특별채용 교원은 제외한다.
2. 본 규정에 의한 연구년 연구 후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전임교원

**제5조(신청절차)** 연구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개시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별지서식 제1호의 연구출장(연구년) 지원신청서와 별지서식 제2호 연구출장(연구년) 연구계획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2.01.>

- ② 삭제 <2022.12.01.>
- ③ 삭제 <2022.12.01.>

**제6조(연구년 선발기준)** ①신청자의 적격 여부, 학과의 인원배정, 근속년수, 연구휴직 횟수 및 기간 등을 참고하여 선발한다. 단, 동점자 발생 시 연구계획서 및 교원업적평가에서 우수한 신청자로 선발한다.<개정 2022.12.01.>

- ②연구년 교원의 수는 장기 국·내외연수 교원수를 포함하여 전체 교원 중 2인 및 학과당 1인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본 대학 내에서 계속 근무한 전임 교원으로서 부임순으로 선정하되, 보직(처·실장)경력 교원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.

**제7조(연구년심의 및 선정)** ①연구년 교원 대상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적격심사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<개정 2022.12.01.>

1. 삭제 <2022.12.01.>
2. 삭제 <2022.12.01.>
3. 삭제 <2022.12.01.>

②교원 연구년 관련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<신설 2022.12.01.>

③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시행 1개월 이전까지 별지서식 제3호의 연구출장(연구년)신고서와 별지서식 제4호의 연구출장(연구년) 세부일정 및 별지서식 제5호의 서약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12.01.>

**제8조(연구년 기간)** 연구년 기간은 단기(6개월)와 장기(1년)로 구분하여 시행하고, 연구년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일정 기간 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직하여야 한다. 단, 제9조 제3호의 의무 이행이 가능한자에 한하며, 산업체 연수는 16주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17.09.01., 2022.12.01.>

**제9조(의무와 서약)** 연구년 교수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고 서약하여야 한다.

1. 연구년 기간 종료 후 별지서식 제6호의 연구출장(연구년) 복귀신고서와 별지서식 제7호의 연구출장(연구년)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개월 연장 승인 후 제출할 수 있다.
2. 연구년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직무에 복귀한다.
3. 직무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3배에 해당되는 기간을 본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. 단, 총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.
4. 위의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 받은 급여 반환은 대학에서 정한 내부 지침을 따른다.<개정 2017.09.01.>
5. 단, 연구년 기간중에 소속연구기관에서 강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
6. 국내에 체류중인 연구년 교수에 한하여 지속적인 논문지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논문지도 활동을 인정한다.

**제10조(연구년 기간의 급여)** 연구년 기간의 급여와 대우는 다음과 같다.

1. 연구년 기간의 연 급여는 성과급여를 제외한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.
2. 연구년 기간중에는 강의, 직무의 의무가 면제된다.
3. 연구년 기간중에 승진 및 호봉 승급에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.

**제11조(제한사항)** 연구년 허락을 얻은 교원은 동 기간 중에 타 기관에 겸직하거나 연구년 연구비 이외의 보수를 지급받는 일을 할 수 없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결	담 당	팀 장	처 장	부총장	총 장
재					

### 연구출장(연구년) 지원신청서

소 속 : 학과  
 직 위 :  
 성 명 :  
 생 년 월 일 :

위 본인은 교원 인사규정에 의거 연구출장(연구년)연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최초 임용일 :
2. 연구신청기간 : 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부터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까지
3. 연구제목 및 내용 :
  
4. 연구계획서(별첨)
5. 연구기간중 주소 및 전화번호  
     주 소 :  
     전화번호 :
6. 대신 연락할 수 있는 가족 및 친지의 성명, 관계, 주소  
     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관 계 :  
     주 소 :  
     연 락 처 : 자택(    -    -    ), 모바일(010-    -    -    )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신청인 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  
 학과장 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**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 하**

## [별지 제2호 서식]

연구출장(연구년) 연구계획서	
제출일 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
소    속	학과    직위 :            성명 :
연 구 기 간	년    월    일부터 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까지
연 구 장 소	
연 구 과 제	
연 구 목 적	
연 구 방 법	
연구결과의 활           용	
연 구 내 용	

[별지 제3호 서식]

결	담 당	팀 장	처 장	부총장	총 장
재					

연구출장(연구년) 신고서

- 1. 소 속 : 학과
- 2. 직 위 :
- 3. 성 명 :
- 4. 생 년 월 일 :
- 5. 목 적 :
- 6. 목 적 지 :
- 7. 기 간 : 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8. 연구사항

9. 연구기간중 주소 및 전화번호

주 소 :  
전화번호 :

10. 대신 연락할 수 있는 친척 및 친지의 성명, 관계, 주소

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관 계 :  
주 소 :

위와 같이 연구출장(연구년)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신청인 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학과장 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 제4호 서식]

연구출장(연구년) 세부일정

년 월 일	내 용	비 고

[별지 제5호 서식]

서 약 서

소 속 : 학과  
직 위 :  
성 명 :  
생년월일 :

위 본인은 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년을 신청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다 음 -

1. 나는 대전보건대학교 교원임을 명심하고 대학의 명예를 위해 제 규정을 준수하겠으며, 만약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.
2. 나는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직무에 즉시 복귀하겠으며,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학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.
3. 나는 연구년 기간 종료 후 복귀신고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겠으며, 복귀 후 1년 이내 국내외학술지에 게재하겠습니다.<개정 2016.04.01.>
4. 나는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교에서 근무하겠습니다.
5. 나는 연구년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절차를 밟겠습니다.<개정 2017.08.01.>
6. 나는 다음의 경우에는 소환조치를 감수하고 지체 없이 귀교하겠습니다.
  - 가. 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
  - 나.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지속적인 연구가 곤란한 경우
  - 다. 연구 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
  - 라. 기타 연구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경우
7. 나는 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연구년 기간 중 받은 급여 반환은 대학에서 정한 내부 지침을 따르겠습니다.<개정 2017.09.01.>

년 월 일  
성 명 : (인)

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 제6호 서식]

결	담 당	팀 장	처 장	부총장	총 장
재					

**연구출장(연구년) 복귀신고서**

1. 소 속 : 대학 학과(부)

2. 직 위 :

3. 성 명 :

4. 생 년 월 일 :

5. 목 적 :

6. 목 적 지 :

7. 기 간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부터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까지

8. 연구사항

9. 대학발전에 기여할 의견 :

1) 학술적인면 :

2) 대학 운영 면 :

3) 기 타 :

10. 연구 소감 :

11. 첨부 : 1) 연구결과보고서 1부.  
          2) 연구결과 실적물(발표후 제출) 1점.

위와 같이 연구출장(연구년) 복귀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신 고 인 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학 과 장 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**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**

